

테라스 석은 실내? 실외?

음식점 관리자 여러분들께

2020년 4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실내에서는 금연입니다.
실내와 실외를 정확히 구별, 인식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외란

바깥 공기 유입이 잘 되지 않는 곳으로, 지붕이 있으며 측벽이 공간의 거의 절반 이상을 에워싸고 있는 경우에는 '실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외'입니다.



테라스 석(발코니·외부 비상계단) 관련

테라스 석(발코니·외부 비상계단) 에서 흡연을 한 경우 담배 연기가 점포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측벽이 공간의 거의 절반 이상을 에워싸고 있지 않더라도 점포 안과 밖의 경계가 벽이나 유리문 등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지붕으로 덮여있는 곳을 '실내'로 규정합니다.

우리 가게의 테라스 석은 어느 쪽일까?



원칙적으로 금연

흡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흡연실, 전자담배 전용 흡연실, 흡연 목적실 또는 흡연가능실을 설치하고 기술적인 기준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흡연실 기술 기준

1. 흡연실 출입구는 실외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의 기류가 0.2m/초 이상 될 것
 2. 벽·천장 등으로 면이 나뉘져 있을 것
 3. 담배 연기가 실외로 나갈 것
- * 흡연실 상황·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뒷면의 '미나토 담배 규칙'도 참조

흡연 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할 것

법률 증진법 제 27조 제 2항

'특정 시설 등의 관리 권한자는 흡연이 가능한 장소를 마련할 경우 원치 않는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가 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법·도시 조례에 관한 문의는 간접흡연 방지대책 상담 창구로>>

☎03-6400-9977

접수 시간: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오후 5시 15분(공휴일·연말연시 제외)
창구: 미나토보건소 4층

미나토 담배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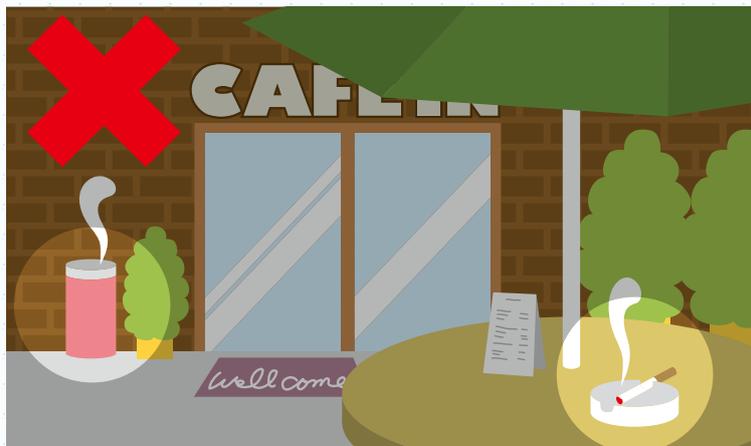
미나토구에서는 ‘미나토구 환경미화 추진 및 흡연으로 인한 민폐 방지에 관한 조례’(2014년 7월 1일 시행)으로 미나토 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근로자, 방문객 등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할 규칙으로서 ‘**미나토 담배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나토구에서는 환경미화 추진 및 흡연으로 인한 민폐 방지에 관한 조례 제 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 1항** 구민 등은 공공장소에서 담배꽂이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 제 2항** 구민 등은 공공장소 등(정해진 흡연장소는 제외한다. 이하 동일.) 에서 흡연해서는 안 된다.
- 제 3항** 구민 등은 공공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공공장소에 있는 다른 구민 등이 담배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 4항** 사업자 등(구, 사업자 및 관계 행정 기관을 말한다. 이하 동일) 은 공공장소에 있는 구민 등이 사업자가 소유한 부지(정해진 흡연 장소는 제외한다. 이하 동일) 안에서 흡연하는 자의 담배 연기를 다른 이용자가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지 내에 재떨이를 철거하거나 이동, 흡연 장소 확보하는 등 기타 공간 분리 정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5항** 사업자 등은 종업원 등 기타 사업활동 관계자가 제 1항부터 3항까지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뒷면의 미나토 담배 규칙 문의처 ◎

환경 리사이클 지원부 환경과 환경정책계 **03-3578-2486**

각 종합출장소 협동추진과 시 바 구 **03-3578-3123** 아자부 지구 **03-5114-8802** 아카사카 지구 **03-5413-7272**
다카나와 지구 **03-5421-7621** 시바우라코난 지구 **03-6400-0031**